

## 미국판결

영화배우인 원고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그 테이프의 일부를 방영한 것은  
보도가치성에 비추어 볼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Michaels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Inc.,  
미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1998. 9. 11. 선고

## 판시요지

1. 영화배우인 원고가 공표권에 기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연방법인 Copight Act 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2. 미연방헌법 수정 제 1 조와 '보도가치성'에 의하여 영화배우인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 즉 영화배우인 원고의 사적 연애관계는 보도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그 보도가치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라면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공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언론기관이 원고가 그 남자친구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중에서 몇 화면을 발췌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 그 비디오테이프가 곧 인터넷에 올라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저작물인 위 비디오테이프의 허용되는 사용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다.

## 사건개요

### 1. 소송의 경과

Bret Michaels(이하 'Michaels')씨가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Inc. (이하 'IEG')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Pamela Anderson Lee(이하 'Lee')는 위 소송에 원고로 소송 참가하면서 Paramount Pictures Corp. (이하 'Paramount') 등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였다. Lee 의 청구내용은 저작권침해, 공표원침해, 프라이버시권리침해 등이다. 소송 도중 Paramount 사는 미연방민사소송규칙(FRCP) 12(b)(6)에 기하여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의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 2. 사실관계

Lee 는 섹스 심볼로 최근 유명한 텔레비전 및 영화배우이다. 1994 년 10 월에 Lee 와 그의 당시 남자친구인 Michaels 는 자신들의 성교행위 장면을 비디오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함)에 촬영하여 두었다. 1997 년 12 월 IEG 는 그 테이프 사본을 입수하고, 몇몇 뉴스프로그램

중개회사들에게 위 테이프를 인터넷을 통하여 1998년 1월 26일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98년 1월 21일 Paramount 사는 자사의 Hard Copy 채널의 뉴스프로그램을 통하여 IEG의 임박한 테이프를 공개 사실을 보도하였다. Hard Copy는 그 보도를 하면서 각 2초 내지 5초 정도 계속되는 여덟 장면을 테이프에서 발췌하여 화면을 보도하였다.

## 판결이유

### 1. 이른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 관하여

미연방 민사소송규칙(FRCP) 56(c)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문제되는 쟁점이 없고 신청 당사자가 법률문제에 관하여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식판결의 신청은 인용된다. 그리고 피신청당사자가 사실문제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남을 입증에 실패한 경우 약식판결은 인용된다. 법원이 판단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무엇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약식판결의 법적 요건 및 기준이다.

### 2. 보통법에 의한 공표권의 침해가 연방법인 CopightLaw 에 의하여 배제되는가에 관하여

Paramounttk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표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연방법인 Copight Law 에 의한 권리와 등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Copight Act 301 조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1976년 연방법인 Copight Act는 명시적으로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모든 배타적 권리와 등가에 속하는 모든 법적 및 형평적 권리"는 위법 301 조에 의하여 배제(preemption)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표권에 근거를 둔 청구는, 그 청구가 저작권 침해의 강우와 종류에 있어서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위 연방법에 의하여 배제되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Lee는 피고가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녀의 이름, 유사성, 동일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요소와 관련이 없는데,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위 테이프 자체의 배포에만 관련이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표권에 기한 원고의 청구가 위 연방법에 의하여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보통법 및 캘리포니아 민사법전 제 3344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344)이 기한 공표권침해 청구에 관하여

쟁점은 공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가 캘리포니아 민사법전 제 3344 조에 규정된 '보도가치성'의 책임 예외 및 보도 가치 있는 정보에 관한 헌법상의 책임 예외에 해당하는가의 판단문제이다.

가. 보통법상의 공표권 침해의 요건 및 성명·유사성 침해에 관한 입법상 규정

보통법상의 공표권 침해의 요건은 ① 피고에 의한 원고의 동일성의 사용, ② 피고의 상업상 이익 등을 위한 사용, ③ 원고의 동의가 없음, ④ 손해의 발생 등이다.

한편 위 3344 조에 의한 제정법상의 청구요건은 위 요건 외에 ① 원고의 이름, 초상 등을 광고 또는 판촉을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사용하는 것, ② 사용과 상업상 목적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 사건에서 Paramount 사는 자신이 원고의 동일, 유사성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다만 Paramount 사는 그 사용이 미연방헌법 수정 제 1 조 및 위 3344 조에 의해 허용된 책임 예외 요건인 '보도가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 나. 보도가치성 / 미연방헌법 수정 제 1 조의 제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금껏 줄기차게 판시하기로, 보도가치성은 정치계 및 공공인물에 관한 사항의 고상한 토론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사교계 인사의 연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적 관심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최근 다시, 프라이버시 침범 및 공표권 침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가치성의 항변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하였다. 즉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보도가치성은 시사적 사건의 보도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뉴스'에 한정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보도기관이 대중들에게 교육, 연예, 계몽 등 목적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명, 유사성 및 사실관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대중이 당해 보도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대되어질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사용은 보도가치 있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Lee 는 주장하기를, Paramount 사는 위와 같은 보도가치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① 테이프의 발췌 부분을 상영함에 의하여, ② Hard Copy 의 시청자들에게 IEG 가 의도하고 있는 테이프 공개 시간과 장소의 정보를 제공함에 의하여 그 보도가치성의 특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판단하건대, 위 첫째 부분, 즉 피고가 테이프의 발췌 부분을 상영함에 의하여 그 보도가치성의 특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보도가치성의 요건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그 발췌 상영은 사적 행위에 대한 침범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므로 그 침범의 정도에 의하여 보도가치성의 특권을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사적 행위를 대한) 침범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공표권 청구와 관련되어서 보도가치성의 판단 요소가 아니다.

침범의 정도는 오로지 사적 사실의 누설을 이유로 한 청구에만 관련하여 판단되어질 요소에 불과하다.

다음 원고는 Hard Copy 가 그 테이프를 광고 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일, 유사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Hard Copy 의 시청자들에게 IEG 가 의 도하고 있는 테이프 공개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피고의 편집상의 결정에 의하면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결국 피고는 위 테이프의 홍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 즉 피고가 IEG 의 위 테이프 배포 행위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그 이벤트의 시간과 장소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보도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성격을 상업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위 3344 조의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더욱 분명한 결론을 남는다. 3344 조의 조문 규정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동일, 유사성의 사용과 상업적 목적 사이에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원고 이름 및 동일, 유사성의 사용은 미연방헌법 수정 제 1 조와 위 캘리포니아 제정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보도가치 있는 사항에 속하고, 이 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4.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로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사적인 사실에 관한 대중에의 누설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다음의 요건 즉 ① 공중에의 누설행위, ② 누설이 사적인 사실일 것, ③ 그 누설이 보통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감, 반감을 느끼게 할 정도일 것, ④ 정당한 공공이익이 없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공적 누설이나 사적 행위에 대한 침범의 경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청구는 모두 보도가치성의 특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보도가치성이라 함은 공공정책 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 인사의 성취, 일상 생활, 연애 등 공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치성 있는 정보의 보도라고 하는 특권이 무제한적 특권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 경우 원고는 당해 보도가 보도가치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 또는 그 보도로 인한 사생활에의 침범의 정도가 공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 한다.

#### 가. Hard Copy의 보도가 원고의 사적 사실을 폭로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미 이 법원은 위 테이프가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는 가처분명령 (In-junction)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 테이프 중의 발췌부분의 보도는 위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인터넷 상의 배포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위 발췌 부분을 살펴보니, 이는 흐릿하게 처리되었고 국부 부위가 인식할 수 없게 처리되었고 발췌 부분의 보도 시간도 각 2 초 내지 5 초의 여덟 장면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보았다면 이는 원고의 사적인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 하겠다.

한편 피고는 주장하기를, 대중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원고인 Lee의 나체 모습, 성행위 장면 등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발췌 방영은 더이상 사적인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이 점에 관하여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가 그 전 남편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인기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진행자가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에 관하여 노골적인 묘사 설명을 하였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법원이 판단하건대, 원고의 과거의 성적인 행위 사실의 공표가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발췌 상영한 것이 원고의 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문제는 그 사적 행위에서의 침범이라고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발췌 보도가 보도가치성의 요건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냐 하는 문제의 판단이다.

#### 나. 보도가치성의 특권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범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보도가치성의 특권의 적용 문제는 공표권 침범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와 유사하다. 여기서 판단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① 공표되는 사실의 사회적 가치, ② 원고가 자발적으로 공공적 관심사에 연루되었는가 여부, ③ 비자발적으로 연루된 사람이라면, 공표되는 사실과 정당한 공공적 관심사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이러한 판단요소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공공적 이해 관계 있는 사항을 진실하게 보도하려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히 제약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원은 그 판단에 있어서 기자나 편집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판단요소와 함께 위와 같은 기자나 편집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행위는 보도가치성의 특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발췌 부분의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공적 인물이고, 보도 내용은 공공적 이해관계의 범위에 속하고 그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정도가 보도가치성의 요건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5.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테이프 발췌 부분의 사용이 Copyrig Act의 107 조에서 보호되는 허용되는 사용(fair use)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위 107 조에 의 하면 106 조 및 106A 조에 불구하고 그 사용이 '뉴스 보도(news reporting)' 등인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비디오 발췌 상영은 확실히 뉴스 보도에 속하고 이는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의 허용되는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가. 사용의 목적 및 성격

먼저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발췌 방영은 위 저작물인 비디오의 형적(transformative) 사용이다. 피고는 그 테이프의 임박한 공개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테이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발췌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용 목적과 성격은 원고가 이 테이프를 원래 만든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서 판단할 때 피고의 위 발췌 사용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저작물의 본질

이 사건 저작물인 테이프는 원고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그 개인적 이유로 이를 만들었고 어느 시기에서고 이를 공개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연방저작권법 제 107 조는 최근 의회에 의하여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은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에 의하여 다른 여러 가지 점에서 허용되는 저작물의 사용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 사건 저작물인 테이프가 공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성격은 피고의 이 사건 발췌 사용을 허용되는 사용이 아니라고 볼 여지를 남기지만 이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 다. 사용 분량의 정도 및 실질성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발췌 보도의 시간, 화면의 흐릿함,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림 등에 의하여 볼 때 그 사용 분량 및 정도에 있어서 위 저작물의 허용되는 사용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 라. 시장에서의 영향

이것은 최근 미연방대법원이 저작물의 허용되는 사용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만일 문제되는 행위가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서 향후 저작물의 시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저작물 침해가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Hard Copy 와 같은 텔레비전 오락뉴스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피고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그 프로그램 보도를 하면서 이 테이프를 발췌하여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시장 상품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시장 상품성에 반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이미 가처분으로 금하였던 것은 바로 IEG 의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테이프의 배포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보아도 피고의 위 발췌 사용은 저작물의 허용되는 사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마.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테이프의 발췌 사용은 저작물인 이 사건 테이프에 관하여 연방법인 Copight Act 제 107 조에서 규정하는 허용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저작권 침해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 27, No. 4, pp.1097 - 1123.

역 : 오관석(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